##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4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김종민·서미화·위성곤

서왕진 • 이재관 • 문진석

천하람 • 이연희 • 민병덕

어기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2의2. 전략산업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 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		
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 ①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특화단지"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			
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전략산업등을 통한 일자		
	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③		
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			
는 경우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수도권정비계획법」		

<u>나에 해당하는</u> 지역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삭 제>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u>역</u>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생 략)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

<u><</u>삭 제>

④ (현행과 같음)